

2015평창군 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위한 평창군의회 의견청취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4. 4. 9(수) 평창군수(도시주택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14. 4. 15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4. 4. 25(금) 제20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연건변화 수용을 위한 도시
재구축 및 지향적 발전전략 수립

3. 주요골자

1) 계획의 범위

- 기준년도 : 2011년(통계 기준연도 2012년)
- 목표연도 : 2015년
- 계획기간 : 2011년 ~ 2015년(5년간)
- 위 치 : 평창군 일원
- 면 적 : 1,463.600km²(도시지역 : 15.945km², 비도시지역 :
1,447.655km²)
- 계획인구 : 57,000인(2020년 : 60,000인)

2) 주요 변경내용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19건
- 용도지구 결정(변경) 21건(신설 9건, 변경 8건, 폐지4건)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6건(폐지 6건)
-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440건(신설 162건, 변경 161건, 폐지 117건)
 - ※ 단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(구적오차, 각각부변경 등) 제외

4. 검토결과

- 본 청취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여건변화 수용을 위한 도시공간 재구축 및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』 제34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
 - 용도지역 결정(변경) 19건,
 - 용도지구 결정(변경)21건(신설9건, 변경 8건,폐지4건),
 -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(변경)6건,
 - 군계획시설 결정 440건 등이 되겠습니다.

- 본 관리계획변경은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.